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7. 9. 20.(수) 13: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효성 위 원 장  
허 욱 부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4인)
  
- 불참위원 : 김석진 상임위원 (1인)

---

## 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3시 3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다섯 분 중 네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석진 위원님께서는 해외 출장으로 인해 부득이 불참하셨습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7년도 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29차 및 제30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4-1. 서면회의 결과 보고

### ○ 이효성 위원장

- 그리고 제31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원안대로 1건이 원안대로 의결·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 5. 국회에서 요구한 속기록 제출 의견

### ○ 이효성 위원장

- 국회에서 2017년도 제21차, 제26차, 제27차, 제30차 전체회의의 속기록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공개 안건의 속기록은 동의 의결절차 없이 제출하되, 인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비공개로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 「법정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후보자 선정 등에 관한 건」,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임명 동의에 관한 건」의 속기록은 그간의 선례를 참고하여 회의에서 선임된 인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의 성명, 발언 위원의 성명 등을 음영처리한 후 열람형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자료제출을 의결합니다.

## 6. 회의공개 여부 결정

###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순서는 안건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방송정책국, 이용자정책국, 방송기반국 순으로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을 순차적으로 심의하겠습니다.

## 7. 의결사항

### 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17-33-181)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의결사항 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주식회사 매일방송)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방송법 제18조제1항제9호, 제19조제1항, 제10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주)매일방송에 대해서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주)매일방송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은 보고를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명령 내용 및 이행실적 점검 결과입니다. '16년 8월 18일 (주)매일방송에게 재승인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과 재방비율 준수를 시정명령으로 명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적 점검 결과, 콘텐츠 투자계획 분야에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행률이 67.9%에 불과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피심인 의견입니다. '14년 재승인 조건을 부여하면서 '매출액 대비 콘텐츠 투자액 비율' '사업계획서에 00% 이행'과 같은 콘텐츠 투자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행 기준을 고지하지 않고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준수하고'라고만 표현하고 있고, 실제 콘텐츠 투자는 매출액 등 사업현황을 무시하고 이루어질 수 없으며 시정명령의 준수에 '16년 899억 1,100만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이 경우 회사의 재무구조와 수익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제 매출액이 사업계획서의 추정 매출액에 미달하면서 이와 비례해 투자금액의 계획대비 실적도 '15년 79%, '16년 80%를 기록했으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주)매일방송은 매출 목표 미달과 누적된 적자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법의 시정명령은 업무정지처분 등(과징금)을 내리기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사업자에게 시정 기회를 주는 것이며, '14년과 '15년의 미이행된 콘텐츠 투자금액과 '16년 투자계획까지 모두 달성하라는 시정명령은 재무구조와 방송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와 홈쇼핑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 미이행을 이유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처분을 내린 사례가 없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피심인의 의견을 감안하더라도, 재승인 신청 시 피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시청자와 국민을 상대로 한 공적약속이라는 점,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가 판시한 바와 같이 시정명령은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라는 법적 의무 그 자체를 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재방법으로는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 또는 승인유효기간 3개월 단축이 가능하며, 업무정지 처분이 시청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이 가능합니다. 승인유효기간 단축은 재승인 심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의미가 없고 업무정지 처분은 시청자 불편이 우려되므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재수준은 '16년 중편3사에 콘텐츠 투자계획 미이행 등으로 각각 4,500만원을 부과한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같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을 의결해 주시면 행정처분 통보를 9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매일방송 재승인 시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과한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허 옥 부위원장

- 여기에서도 제시가 됐습니다만 앞서 조선방송을 포함해서 3개 종편PP의 경우에도 이런 조건을 제시했었는데 그 후에 과징금 취소 소송을 내지 않았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냈었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그때 법적인 쟁점은 따로 없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동일하게 피심인이 제시한 이 의견과 같은 내용의 문제제기를 했고, 법원에서는 저희 쪽 입장을 반영해서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콘텐츠 투자계획은 방송의 다양성 제고와 콘텐츠 시장 활성화라는 종편PP 도입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점검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요구 수준이 경미하게 다루어질 경우에 방송사업자가 이행의도가 없거나 아니면 불가능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사업승인을 받은 뒤에 이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태가 관행으로 남을 우려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의 100% 이행은 반드시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안건의 행정처분 의결주문에 이견이 없고 그대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분 의견 있으면 주시지요.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여기 보시면 피심인 의견이 있습니다. '매출액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검토의견에 나와 있다시피 그것이 고려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재승인 조건에 대한 해석을 함에 있어서 법원에서도 성실한 이행이라는 것이 100% 준수를 의미한다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5페이지 상단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서 이행, 특히 조건으로 부과된 조건을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일관되게 위원회 입장을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건도 예외 없이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한 것입니다. 앞서 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재승인 조건의 이행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이라는 것이 최대한 노력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실히 이행한다는 것은 100% 준수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 부분들은 위원회의 행정제재나 법원의 판례로 이미 확립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린 안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혹시 표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 표철수 상임위원

- 원안대로 좋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나. 주식회사 봄코리아(주)엘지유플러스 간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협정 결과에 관한 재정건 (2017-33-182)

#####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이용자정책국 소관 안건인 <의결사항 나> ‘주식회사 봄코리아와 (주)엘지유플러스 간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협정체결에 관한 재정건’에 대하여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신청인 주식회사 봄코리아가 이동전화 재판매 사업을 위해 피신청인 LGU+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협정결과에 관한 재정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기초사실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인의 재정신청 경위를 보고드리면 신청인(주식회사 봄코리아)은 2014년 9월에 LGU+의 통신상품 가입 유치를 위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다단계영업을 통하여 LGU+ 가입자를 모집해 온 사업자입니다. 금년 1월 LGU+가 ‘다단계 영업의 Fade-out 결정’ 이후에 다단계 대리점에서 별정통신사업자로 전환하고 과기정통부에 등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전화 재판매를 위해서 LGU+를 상대로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협정체결을 요청했습니다. LGU+가 협정체결 요청을 거부하자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 ‘도매제공 협정체결’ 재정을 신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신청인 LGU+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을 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도매제공은 할 수 있으나 과기정통부 고시에 따른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는 아닙니다. 재정신청 취지와 주요경과는 생략하고, 다음 4쪽 이번 재정신청 건의 주요쟁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쟁점입니다. 주식회사 봄코리아는 LGU+를 상대로 도매제공 협정체결을 요청했으나 LGU+가 협정체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아닌 기간통신사업자가 도매제공 협정체결 요청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LGU+가 ‘협정체결 요청을 거부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청인의 주장과 피신청인의 의견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고, 다음 6쪽 판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매제공 협정체결 의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도매제공 여부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도매제공을 하여야 하는 도매제공사업자는 동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련고시를 통하여 정하도록 하여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아닌 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LGU+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아닌 LGU+는 도매제공 협정체결 요청이 있더라도 반드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위반 관련 여부에 대해 판단하겠습니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아닌 기간통신사업자가 도매제공 협정체결 요청을 거절한 사실만으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볼 수가 없고 그 부당성이 입증된 경위에 한하여 금지행위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 LGU+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아니라는 점, 피신청인이 다단계 영업과 관련하여 국회·언론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다단계 영업에 대한 Fade-out 방침'을 결정한 이후에 신청인이 다단계영업 방식으로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겠다는 협정체결 요청이 있었던 만큼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LGU+가 도매제공 협정체결 요청을 거부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당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신청인 주식회사 봄코리아의 청구를 기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설명은 복잡합니다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다단계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 달라, 그런데 피신청인은 그것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 즉 다단계영업을 점차적으로 시장에서 중단하기 위해 그런 방침을 정했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는 것이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봄코리아가 계약을 새롭게 체결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갱신 요청한 것입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2014년에는 다단계대리점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지금 현재는 도매제공 협정을 체결해서 별정통신사업자, 이동전화재판매사업 소위 알뜰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알뜰통신사업에 여러 가지 영업방식이 있을 텐데 봄코리아는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을 하려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U+는 회사 방침상 다단계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도매제공 협정에 응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여기 판단도 잘 되어 있습니다만 3기 방통위 기간 내내 이동통신의 다단계영업은 큰 논란이 됐었고 정말 많은 토론을 거쳐 이동통신 시장에서 다단계영업은 이용자들의 편익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정책이라고 판단했고, 또 그에 대한 제재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통사들, 특히 다단계영업을 많이 했던 LGU+가 다단계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4기 방통위가 새롭게 출범하는 초기에 이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방통위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다단계영업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침이다, 이 정도로 입장을 정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분명하게 크게 이야기하시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다단계영업이 법상으로 허용된 영업방식이기는 한데 불법행위가 많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방통위 입장로서는 권장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습니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다단계영업은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이용자 피해를 유발시켰습니다. 위원회나 이통 3사 모두 그러한 방식들로는 더 이상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지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김종영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그런데 지금 본 사안에 대해서는 다단계에 대해서 방통위의 입장을 굳이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다단계영업과 상관없이 LGU+가 도매제공을 해야 할 의무사업자냐, 그다음에 거부행위가 다른 사업자에 비해 부당한 처사였느냐 그 부분만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굳이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기각하는 충분한 사유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법적으로 명확한 사안이고 의결주문이 타당하여 저는 주문내용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건 (2017-33-183)**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사항 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허위 고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관련 규정의 일몰 등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고시), 「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고시)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지난 8월 25일 개정안 및 폐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 후 8월 31일부터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했습니다. 사업자나 관계부처 이견이 없었습니다. 9월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받은 결과 규제 비대상으로 확인받았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관련해서 유발요인 없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검토기한 연장과 관련해서 과징금 세부기준 등 3건의 고시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2017년 9월 30일까지'에서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필수적 감경 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에 필수적 감경 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고시 제7조를 개정하여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하고, 동일한 위반행위로 위반행위의 종료일 기준 최근 3년간 위반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별표 3] II. 제3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전기통신사업법 하위 고시 기준과 감경의 기준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관련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이 금년 9월 30일자로 일몰될 예정에 따라 하위 규정을 고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고시)을 폐지하고, 과징금 세부기준 고시 중에서 법 제4조제2항 일몰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고시 제3조제1항을 개정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문 대비표는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고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1항·제2항이 일몰되어 폐지될 예정이므로 법 제4조제2항을 근거로 한고시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이상 4건의 고시 개정안 및 폐지안에 대해서는 관보 게재 후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은 고시 일부 개정안 상세내용을 첨부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라. OBS경인TV(주)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에 관한 건 (2017-33-184)**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사항 라> 'OBS경인TV(주)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동철 방송

기반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 주문입니다. 'OBS경인TV(주)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아래와 같이 경감한다'가 되겠습니다. 경감 내용은 2017년 편성의무 목표를 폐쇄자막방송 50%, 화면해설 방송 5.5%, 수어방송 3.0%로 하는 것이며, 경감 조건으로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인방송 편성 시간을 일상적 시간대, 즉 07시~일익 01시에 편성하고 화면해설방송 재방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7조의2의에 따라 OBS경인TV(주)가 신청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 경과는 7월 12일에 OBS가 경감신청을 하였고, 9월 11일에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OBS가 '17년에 대해 장애인방송 제작 자부담금을 '최대 1.5억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을 요청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OBS 요청대로 하게 되면 장애인방송 제작 자부담 가능액 1.5억원을 투여해 폐쇄자막 50%, 화면해설 5%, 수어방송 2.5% 편성하는 것인데, 이는 OBS에 부과된 의무의 절반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의 심의 결과입니다.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 요건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16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OBS는 최근 5년 중 4년간 적자이고 자본잠식률이 96.4%로 고시에 따른 경감 요건인 70%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심의한 결과, OBS경인TV(주)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17년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목표를 경감하되, 3년 연속 동일한 사안의 경감 신청이므로 방송사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는 보장위원회 의견에 따라 시·청각장애인 단체 및 OBS경인TV(주)와 협의를 통해, '17년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목표를 폐쇄자막 50%, 화면해설 5.5%, 수어 3.0%로 전년 대비 소폭 상향된 편성목표로 재조정하고, 또한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인방송 편성시간을 일상적 시간대에 편성하고, 화면해설방송 재방비율을 낮춰줄 것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시·청각장애인 단체 및 OBS경인TV(주)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편성의무 경감수준을 심의·의결하였는바 시·청각장애인의 시청권을 가능한 보장하고, 경영위기 방송사업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9월 22일에 OBS경인TV(주)에 의결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한 OBS의 경감 신청서와 시청보장위원회의 의결서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의 방송 시청권이 보다 강화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사 경영상황과 관련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요. 그리고 방송사 경영상황이 나빠지는 것은 여러 가지 대외여건도 있겠지만 방송사 자체의 경

영철학이나 경영기법과도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범위를 확장해서 보면 장애인방송 시청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OBS 같은 경우 제작비가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사가 연말까지 증자조건이 부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만 처리하지 말고 우리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된 조건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다른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이 경감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절약되는 것입니까?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저희가 경감을 해주지 않을 경우 당초 목표대로 하면 자부담이 3억 8,0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경감해 주면 반 정도로 줄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반 수준으로 자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2012년 이후에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필수지정사업자 가운데 경감 신청한 방송사업자가 OBS 말고 다른 곳이 있습니까?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없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OBS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한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의 고심 어린 심의결과를 저 역시 수용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방송 제작비 경감제도가 방송사의 자구노력이 선행된 다음에 정부의 진흥정책 일환으로 경감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런데도 OBS가 경감을 기정사실화하고 장애인방송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경감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는 방송의 공적책무에 대한 의지가 매우 약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는 장애인방송 편성 후 경감신청서를 낸 것 가운데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OBS가 2015년에 9,500만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구노력을 통해 다소라도 흑자가 날 경우 조항에 따른 최근 5년 중 4년 이상 적자상태라는 편성의무의 경감신청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예, 맞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그러면 연간 장애인방송 총 제작비가 현행 대비해서 5억 4,500만원이 증가하고 이것을 3년

간 지속하게 되는데 현재도 경영이 어려워서 1억 5,000만원밖에 못하고 있는데 흑자가 나게 되면 반대로 연간 5억 4,500만원씩을 3년 동안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 무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고시 변경안을 요청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사무처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 정승원 시청자지원팀장

- 실질적으로 OBS 편성 경감에 관련된 기준은 '15년도에 OBS 이 부분들 때문에 고시안들이 경감 규정에 신설되었습니다. 당시의 사항들이 있고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 상태나 이러이러한 부분들보다 앞서 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방송의 취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로 공적책임을 다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OBS가 요청한 것은 내년도를 가정해서, 이미 내년에 흑자가 됐을 때는 다시 프로그램이 올라온다는 것을 가정해서 저희 쪽에 고시를 개정하는 것이 어떠냐고 했는데 그것은 금번 취지와는 일단 배치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랬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일단 OBS가 자구노력을 먼저 생각하고 그 내용들을 제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그리고 OBS가 매년 5.5억원씩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데 원래 당초 목표를 이렇게 달성하는데 필요한 금액은 3억 8,000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특정 방송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고시가 변경되는 그런 원칙이 흔들리는 경우는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7. 보고사항

###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보고사항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하는 내용은 위원회에 '17년 8월 31일에 보고드린 공익·장애인 복지채널 제도 개선(안)의 후속조치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생각하고 주요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2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1년이던 공익채널 선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과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방송복지채널 인정 기본계획'에서 정하던 공익채널의 선정절차, 방송 및 심사기준 등을 고시로 정하도록 시행령에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을 접수해 주시면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18년 1분기까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없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지난번 후속조치이기 때문에 저도 이견은 없는데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지난 회의 때 공익·장애인복지채널의 콘텐츠 품질 제고를 위해서 과기정통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협의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것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일단 저희 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그쪽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협의해 보자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그것이 빨리 진전이 돼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나. 공익성 방송분야 고시 일부 개정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보고사항 나> '공익성 방송분야 고시 일부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도 방금 보고드린 시행령 개정안과 같이 지난번 공익·장애인복지 채널 제도 개선(안)의 후속조치로 공익성 방송분야 고시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2가지입니다. 먼저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 관련 사업자가 다수 존재하고 정책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분야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존의 '교육지원' 분야를 '교육 및 지역' 분야로 변경하고, 교육 및 지역 분야의 전문편성내용에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를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오늘 보고드린 내용을 접수해 주시면 올해 4분기까지 공익성 방송분야 고시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보고사항 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재영 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입니다. 실질적인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 마련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일부 규제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면 분쟁조정 등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금년 3월에 마련하여 사업자 의견 수렴, 소비자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쳤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9를 신설하여 전기통신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단말장치 결함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는 단말장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의하여 이용자 보호정책을 마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보호정책의 보고, 고지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위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리콜 가이드라인을 작년 12월에 마련했습니다만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재정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제45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재정제도는 전기통신사업자 상호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에도 적용하고 있으나 소액사건인 이용자 분쟁 해결에는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재정은 사업자 간 분쟁에 활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8까지 신설하여 전기통신사업에서의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효력 등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제50조제1항제7호를 개정하여 유선포털과 CP 콘텐츠사업자 간 공정한 수익 배분 의무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현행 규정은 이동통신사나 무선포털사업자와 콘텐츠제작자 간 거래 시 적절한 수익배분 거부·제한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서 유선포털사업자에게도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절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제대상을 현재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에서 '전기통신역무', 즉 유선과 무선 전체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제3항을 신설하여 자료제출 요구 불응 시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범위반 사실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자료제출 요구 불응 시 매 1일당 평균매출액의 1,000분의 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매 1일당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는 이행강제금 관련된 규정이 금년 4월에 신설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자료제출 불응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위원회에 보고 후 9월~11월까지 입법예고 및 부처 협의를 거치고 12월까지 규제심사를 받겠습니다. 내년 1월~2월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내년 3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붙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재정제도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지 않습니까?

○ 김종영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주된 분쟁인 유선포털과 CP 간 공정한 수익배분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수익배분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나중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생각입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배분 기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간 협의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소위 갑을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희 방통위에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개입할 근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당연히 수익배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들 간 협의해야 할 사안이고 자율적인 영역으로 맡겨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안별로 분쟁 유형별로 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 불응 시 매 1일당 평균매출액의 1,0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쌓이면 1,0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도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그러면 1,000분의 3 범위 이내라고 했으니까 이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기준, 앞서 말씀드렸던 수익배분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을 사전에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내년 3월에는 국회 제출 예정이지 않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먼 것 같지만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령 개정할 때 보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고시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들이 늦어지면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적용하는 데는 또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법이 마련됐을 때 시행하는 데도 차질 없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방통위의 방통정책이 그동안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비대칭 규제를 통해 독과점 사업자의 투자와 시장 규모 확대가 정책목표였습니다. 그러다가 스마트폰 대중화,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 정착, 요금 할인경쟁이 심화되고, 공정한 단말기 유통 질서 확립 요구 등 서비스 경쟁 촉진을 위한 이용자 후생 증가에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이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를 잘 반영해서 소비자보호 및 권한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으로 우리 위원회가 정책 패러다임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이는 근거 사례가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앞서 고삼석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분쟁조정제도가 사업자와 다수의 이용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만약에 활성화되면 조정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 법안에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통신사업자의 분쟁조정과 관련된 전담기구를 별도의 사무국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법정 법인 중에서 일부 조직을 별도로 신설해서 많은 분쟁 수요를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결국 이용자 피해 구제 전담기구의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향후에 이러한 이용자 피해 구제기구에서 분쟁조정의 지원뿐만 아니라 이용자보호나 권익증진과

관련된 교육사업 그리고 이용자보호 시책 수립을 위한 연구 등도 담당해서 방통위가 방송통신 이용자보호의 전담기관으로 거듭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8.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9월 28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9.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4시 18분 폐회 】